

간병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는 시민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지만,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간병인으로 불리는 간병노동자들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다. 법원도, 고용노동부도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노동법은 물론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된다. 많은 간병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 사고, 감염, 비인격적 대우, 인권침해 등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간병노동자들의 건강실태

지난 10월 국회토론회에서 간병노동자들의 건강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실태조사는 전국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노동자 302명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간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간병노동자들은 대부분 24시간 종일제 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94.6%, 휴게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91.6%에 이르렀다.

간병노동자들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1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 간병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사고(상해)를 경험했으며, 약 37%가 근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고(상해)와 감염병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설문 참여 간병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약 71%가 반말, 모욕적인 말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제도의 두 가지 개선 방향

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크게 두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간병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노무를 제공 받는 병원에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병원에 간병노동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노동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에 대해서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존재하는 법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 개선에 불과하므로, 비교적 빠르고 용이한 법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둘째, 간병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은 이미 노동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이미 존재하는 법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교적 빠르고 용이한 법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새로운 노동법제 마련의 필요성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다.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시급한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노동기본권 중 일부에 대한 불완전한 보장은 대부분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이 같은 특례제도는 그 특성상 일정한 적용요건 및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특례제도 적용을 피하려는 고용구조 및 형태의 왜곡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그 보호 범위 안의 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들 간의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제의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 적용은 이를 위한 중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다. 🐾

